

송도자이 더 스타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A17블록)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사항은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안내 사항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 A17블록 송도자이 더 스타는 사이버 건본주택을 운영(<https://xi.co.kr/sd2>) 합니다.
 - 본 사이버 건본주택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공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xi.co.kr/sd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전 안내한 해당 날짜 및 운영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 건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및 계약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가능)
 - 건본주택 방문 기간 내 입장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출입이 제한됩니다.
 - * 건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부스형 클린에어샤워기, 비닐장갑 착용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 열화상 카메라 또는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는 경우
 - *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거나, 기타 사업주체 등이 요청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건본주택 관람, 아래에 기재된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건본주택 운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032-716-5582)을 실시할 예정이나, 간혹 통화량이 많은 경우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건본주택의 유니트 관람은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에 한하여 서류접수 기간 내에만 관람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예비당첨자)의 사전 서류접수 및 정당계약 기간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사전예약은 당사 홈페이지(xi.co.kr/sd2)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9.2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1.05)입니다.(청약자격조건인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우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착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 (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 제3호)	10년간

-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 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 순위별로 공급 세대수의 50%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한 자(2019.11.05.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 및 필요시 세대구성원)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인천광역시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우선공급 대상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되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거주 인정 기준

- ①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제도약용을 막기 위해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로 재출국시 계속 해외 체류로 봄)
- ②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 해당기간(①, ②)동안 국내 거주로 불인정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합니다.
→ 단, 90일 이내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적용사례

- ①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②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해당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③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불가합니다.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기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신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필요	-
소득기준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에서 접수하지 않는 주택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 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 및 '청약 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s://xi.co.kr/sd2)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용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투기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임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담보 인정 비율(LTV), 총부채 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본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정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매금지, 재당첨제한,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및 가점제 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101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단, 주택법 제65조 제6항에 의거하여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자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임으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 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는 부적격 의심이 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계약 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부적격자 의심자로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의 지역은 6개월, 위촉지역은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사후) 및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11월 15일(월)	11월 16일(화)	11월 22일(월)	11월 25일(목) ~ 12월 3일(금)	12월 9일(목) ~ 12월 20일(월)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사전에약 견본주택 방문 (10:00 ~ 18:00)	사전에약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 모바일 : 스마트폰앱			송도자이 더 스타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4-7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17971호(2021.11.0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6-11번지(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A17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층~44층 9개동 총 아파트 1,53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타입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일반공급 세대수	최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21000830	01	084.0000A	84A1	84.7098	33.3678	118.0776	56.2994	174.3770	62.9185	375	11
				84A2	84.9282	33.3540	118.2822	56.4445	174.7267	63.0808	369	9
		02	084.7098B	84B	84.7098	33.3678	118.0776	56.2994	174.3770	62.9185	166	4
		03	084.9964C	84C	84.9964	34.4164	119.4128	56.4899	175.9027	63.1314	142	4
		04	084.9559D	84D	84.9559	34.6137	119.5696	56.4629	176.0325	63.1013	86	2
		05	097.6414T	97Tb3	97.6414	38.9383	136.5797	64.8939	201.4736	72.5235	12	-
		06	099.7748A	99A	99.7748	38.3782	138.1530	66.3118	204.4648	74.1081	242	6
		07	099.9742B	99B	99.9742	39.2712	139.2454	66.4444	205.6898	74.2562	40	1
		08	099.8725C	99C	99.8725	40.8013	140.6738	66.3768	207.0506	74.1807	38	-
		09	099.0000T	99T1	99.8725	40.8013	140.6738	66.3768	207.0506	74.1807	4	-
				99T2	99.8588	41.9766	141.8354	66.3676	208.2030	74.1705	5	1
				99T3	99.9448	41.8576	141.8024	66.4248	208.2272	74.2344	6	1
		10	103.9728T	103Tb1	103.9728	40.8632	144.8360	69.1018	213.9378	77.2262	4	-
		11	104.8719T	104Ta3	104.8719	40.7162	145.5881	69.6995	215.2876	77.8940	4	-
		12	105.0454T	105Tb2	105.0454	41.5546	146.6000	69.8147	216.4147	78.0229	5	-
		13	107.0657T	107T1	107.0657	41.2776	148.3433	71.1574	219.5007	79.5235	6	-
		14	107.9607T	107T2	107.9607	41.4015	149.3622	71.7522	221.1144	80.1883	6	-
		15	111.3754T	111Tc1	111.3754	43.4804	154.8558	74.0217	228.8775	82.7245	5	-
		16	112.6599T	112Ta2	112.6599	43.2079	155.8678	74.8754	230.7432	83.6786	4	-
		17	118.9899T	118T3	118.9899	45.1337	164.1236	79.0824	243.2060	88.3802	10	-
18	133.4990P	133P	133.4990	56.0386	189.5376	88.9510	278.4886	99.2554	1	-		
19	144.6744P	144P	144.6744	64.4123	209.0867	96.1529	305.2396	107.4575	2	-		
20	151.3362P	151P	151.3362	65.3127	216.6489	100.5804	317.2293	112.4056	1	-		
합 계											1533	39

※ 면적 환산방법(공급면적→평)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면적환산 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한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환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타입 중 전용 84A1, 84A2, 99T1, 99T2, 99T3는 타입별 면적 및 구조가 상이하나, 청약신청시 전용 084.0000A(84A1, 84A2), 099.0000T(99T1, 99T2, 99T3) 균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타입별로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당첨자는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를 통해 본인의 당첨 타입을 정확히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안내문 등으로 대상 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및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원)

주택형	타입	동/라인	층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1차(10%)	2차(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 시	2022.01.24	2022.06.13	2022.12.13	2023.05.15	2023.10.13	2024.03.13	2024.08.13	입주지정일		
084.0000A	84A1	105 4호, 106동 1호	1층	2	537,997,000	276,903,000		814,900,000	81,490,000	81,490,000	81,490,000	81,490,000	81,490,000	81,490,000	81,490,000	81,490,000	81,490,000	162,980,000	
		102동 2호, 103동 2호, 104동 2호, 105동 3,4호 106동 1,2호, 107동 2,5호, 108동 2,5호	2층	11	556,549,000	286,451,000		843,0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168,600,000
			3층	11	568,895,000	292,805,000		861,700,000	86,170,000	86,170,000	86,170,000	86,170,000	86,170,000	86,170,000	86,170,000	86,170,000	86,170,000	86,170,000	172,340,000
			4층	11	581,307,000	299,193,000		880,500,000	88,050,000	88,050,000	88,050,000	88,050,000	88,050,000	88,050,000	88,050,000	88,050,000	88,050,000	88,050,000	176,100,000
			5층	11	593,652,000	305,548,000		899,20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179,840,000
			6~9층	44	602,961,000	310,339,000		913,300,000	91,330,000	91,330,000	91,330,000	91,330,000	91,330,000	91,330,000	91,330,000	91,330,000	91,330,000	91,330,000	182,660,000
			10~19층	110	612,204,000	315,096,000		927,300,000	92,730,000	92,730,000	92,730,000	92,730,000	92,730,000	92,730,000	92,730,000	92,730,000	92,730,000	92,730,000	185,460,000
			20~29층	101	618,410,000	318,290,000		936,700,000	93,670,000	93,670,000	93,670,000	93,670,000	93,670,000	93,670,000	93,670,000	93,670,000	93,670,000	93,670,000	187,340,000
		102동 2호, 105동 3,4호, 107동 5호, 108동 5호	30~39층	50	624,550,000	321,450,000		946,0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189,200,000
	40~44층	24	630,756,000	324,644,000		955,400,000	95,540,000	95,540,000	95,540,000	95,540,000	95,540,000	95,540,000	95,540,000	95,540,000	95,540,000	95,540,000	191,080,000		
	84A2	105동 1호	1층	1	537,997,000	276,903,000		814,900,000	81,490,000	81,490,000	81,490,000	81,490,000	81,490,000	81,490,000	81,490,000	81,490,000	81,490,000	162,980,000	
		101동 1,3호, 102동 4호, 103동 3호, 104동 3호, 105동 1호, 106동 4호, 107동 3호, 108동 3호	2층	9	556,549,000	286,451,000		843,0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168,600,000
			3층	9	568,895,000	292,805,000		861,700,000	86,170,000	86,170,000	86,170,000	86,170,000	86,170,000	86,170,000	86,170,000	86,170,000	86,170,000	86,170,000	172,340,000
			4층	9	581,307,000	299,193,000		880,500,000	88,050,000	88,050,000	88,050,000	88,050,000	88,050,000	88,050,000	88,050,000	88,050,000	88,050,000	88,050,000	176,100,000
			5층	9	593,652,000	305,548,000		899,20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179,840,000
			6~9층	36	602,961,000	310,339,000		913,300,000	91,330,000	91,330,000	91,330,000	91,330,000	91,330,000	91,330,000	91,330,000	91,330,000	91,330,000	91,330,000	182,660,000
			10~19층	90	612,204,000	315,096,000		927,300,000	92,730,000	92,730,000	92,730,000	92,730,000	92,730,000	92,730,000	92,730,000	92,730,000	92,730,000	92,730,000	185,460,000
			20~29층	81	618,410,000	318,290,000		936,700,000	93,670,000	93,670,000	93,670,000	93,670,000	93,670,000	93,670,000	93,670,000	93,670,000	93,670,000	93,670,000	187,340,000
30~39층		87	624,550,000	321,450,000		946,0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189,200,000		
101동 1, 3호, 102동 4호, 103동 3호, 104동 3호, 105동 1호, 107동 3호, 108동 3호	40~44층	38	630,756,000	324,644,000		955,400,000	95,540,000	95,540,000	95,540,000	95,540,000	95,540,000	95,540,000	95,540,000	95,540,000	95,540,000	95,540,000	191,080,000		

주택형	타입	동/라인	층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10%)	2차(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 시	2022.01.24	2022.06.13	2022.12.13	2023.05.15	2023.10.13	2024.03.13	2024.08.13		입주지정일
084.7098B	84B	103 6호, 104동 6호	1층	2	537,997,000	276,903,000		814,900,000	81,490,000	81,490,000	81,490,000	81,490,000	81,490,000	81,490,000	81,490,000	81,490,000	162,980,000	
		103동 5,6호, 104동 5,6호	2층	4	556,549,000	286,451,000		843,0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168,600,000
			3층	4	568,895,000	292,805,000		861,700,000	86,170,000	86,170,000	86,170,000	86,170,000	86,170,000	86,170,000	86,170,000	86,170,000	86,170,000	172,340,000
			4층	4	581,307,000	299,193,000		880,500,000	88,050,000	88,050,000	88,050,000	88,050,000	88,050,000	88,050,000	88,050,000	88,050,000	88,050,000	176,100,000
			5층	4	593,652,000	305,548,000		899,20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179,840,000
			6~9층	16	602,961,000	310,339,000		913,300,000	91,330,000	91,330,000	91,330,000	91,330,000	91,330,000	91,330,000	91,330,000	91,330,000	91,330,000	182,660,000
			10~19층	40	612,204,000	315,096,000		927,300,000	92,730,000	92,730,000	92,730,000	92,730,000	92,730,000	92,730,000	92,730,000	92,730,000	92,730,000	185,460,000
			20~29층	36	618,410,000	318,290,000		936,700,000	93,670,000	93,670,000	93,670,000	93,670,000	93,670,000	93,670,000	93,670,000	93,670,000	93,670,000	187,340,000
			30~39층	40	624,550,000	321,450,000		946,0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189,200,000
40~43층	16	630,756,000	324,644,000		955,400,000	95,540,000	95,540,000	95,540,000	95,540,000	95,540,000	95,540,000	95,540,000	95,540,000	95,540,000	191,080,000			
084.9964C	84C	107동 6호, 108동 6호	1층	2	532,386,000	274,014,000		806,400,000	80,640,000	80,640,000	80,640,000	80,640,000	80,640,000	80,640,000	80,640,000	80,640,000	161,280,000	
		107동 1,6호, 108동 1,6호	2층	4	550,739,000	283,461,000		834,200,000	83,420,000	83,420,000	83,420,000	83,420,000	83,420,000	83,420,000	83,420,000	83,420,000	83,420,000	166,840,000
			3층	4	562,953,000	289,747,000		852,700,000	85,270,000	85,270,000	85,270,000	85,270,000	85,270,000	85,270,000	85,270,000	85,270,000	85,270,000	170,540,000
			4층	4	575,233,000	296,067,000		871,300,000	87,130,000	87,130,000	87,130,000	87,130,000	87,130,000	87,130,000	87,130,000	87,130,000	87,130,000	174,260,000
			5층	4	587,446,000	302,354,000		889,800,000	88,980,000	88,980,000	88,980,000	88,980,000	88,980,000	88,980,000	88,980,000	88,980,000	88,980,000	177,960,000
			6~9층	16	596,623,000	307,077,000		903,700,000	90,370,000	90,370,000	90,370,000	90,370,000	90,370,000	90,370,000	90,370,000	90,370,000	90,370,000	180,740,000
			10~19층	40	605,800,000	311,800,000		917,600,000	91,760,000	91,760,000	91,760,000	91,760,000	91,760,000	91,760,000	91,760,000	91,760,000	91,760,000	183,520,000
			20~29층	38	611,940,000	314,960,000		926,900,000	92,690,000	92,690,000	92,690,000	92,690,000	92,690,000	92,690,000	92,690,000	92,690,000	92,690,000	185,380,000
		107동 6호, 108동 6호	30~39층	20	618,014,000	318,086,000		936,100,000	93,610,000	93,610,000	93,610,000	93,610,000	93,610,000	93,610,000	93,610,000	93,610,000	93,610,000	187,220,000
40~44층	10		624,154,000	321,246,000		945,400,000	94,540,000	94,540,000	94,540,000	94,540,000	94,540,000	94,540,000	94,540,000	94,540,000	94,540,000	189,080,000		
084.9559D	84D	107동 4호, 108동 4호	1층	2	526,708,000	271,092,000		797,800,000	79,780,000	79,780,000	79,780,000	79,780,000	79,780,000	79,780,000	79,780,000	79,780,000	159,560,000	
			2층	2	544,864,000	280,436,000		825,300,000	82,530,000	82,530,000	82,530,000	82,530,000	82,530,000	82,530,000	82,530,000	82,530,000	165,060,000	
			3층	2	557,011,000	286,689,000		843,700,000	84,370,000	84,370,000	84,370,000	84,370,000	84,370,000	84,370,000	84,370,000	84,370,000	168,740,000	
			4층	2	569,093,000	292,907,000		862,0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172,400,000
			5층	2	581,241,000	299,159,000		880,400,000	88,040,000	88,040,000	88,040,000	88,040,000	88,040,000	88,040,000	88,040,000	88,040,000	88,040,000	176,080,000
			6~9층	8	590,285,000	303,815,000		894,100,000	89,410,000	89,410,000	89,410,000	89,410,000	89,410,000	89,410,000	89,410,000	89,410,000	89,410,000	178,820,000
			10~19층	20	599,396,000	308,504,000		907,900,000	90,790,000	90,790,000	90,790,000	90,790,000	90,790,000	90,790,000	90,790,000	90,790,000	90,790,000	181,580,000
			20~29층	18	605,404,000	311,596,000		917,000,000	91,700,000	91,700,000	91,700,000	91,700,000	91,700,000	91,700,000	91,700,000	91,700,000	91,700,000	183,400,000
			30~39층	20	611,478,000	314,722,000		926,200,000	92,620,000	92,620,000	92,620,000	92,620,000	92,620,000	92,620,000	92,620,000	92,620,000	92,620,000	185,240,000
			40~44층	10	617,552,000	317,848,000		935,400,000	93,540,000	93,540,000	93,540,000	93,540,000	93,540,000	93,540,000	93,540,000	93,540,000	93,540,000	187,080,000

주택형	타입	동/라인	층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10%)	2차(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 시	2022.01.24	2022.06.13	2022.12.13	2023.05.15	2023.10.13	2024.03.13	2024.08.13		입주지정일	
097.6414T	97b3	109 1,4호	8층	2	743,853,000	382,860,909	38,286,091	1,165,0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233,000,000	
		109동 2,3호	8층	2	738,745,000	380,231,818	38,023,182	1,157,000,000	115,700,000	115,700,000	115,700,000	115,700,000	115,700,000	115,700,000	115,700,000	115,700,000	115,700,000	231,400,000	
			11층	2	748,322,000	385,161,818	38,516,182	1,172,000,000	117,200,000	117,200,000	117,200,000	117,200,000	117,200,000	117,200,000	117,200,000	117,200,000	117,200,000	234,400,000	
		109동 1,4호	9층	2	735,552,000	378,589,091	37,858,909	1,152,000,000	115,200,000	115,200,000	115,200,000	115,200,000	115,200,000	115,200,000	115,200,000	115,200,000	115,200,000	115,200,000	230,400,000
			10층	2	740,660,000	381,218,182	38,121,818	1,160,000,000	116,000,000	116,000,000	116,000,000	116,000,000	116,000,000	116,000,000	116,000,000	116,000,000	116,000,000	116,000,000	232,000,000
		109동 2,3호	12층	2	750,876,000	386,476,364	38,647,636	1,176,000,000	117,600,000	117,600,000	117,600,000	117,600,000	117,600,000	117,600,000	117,600,000	117,600,000	117,600,000	235,200,000	
099.7748A	99A	103동 4호, 104동 4호	1층	2	612,322,000	315,161,818	31,516,182	959,000,000	95,900,000	95,900,000	95,900,000	95,900,000	95,900,000	95,900,000	95,900,000	95,900,000	95,900,000	191,800,000	
		103동 4호, 104동 4호, 105동 2호, 106동 3호	2층	4	633,456,000	326,040,000	32,604,000	992,100,000	99,210,000	99,210,000	99,210,000	99,210,000	99,210,000	99,210,000	99,210,000	99,210,000	99,210,000	198,420,000	
		101동 2호, 102동 3호, 103동 4호, 104동 4호, 105동 2호, 106동 3호	3층	6	647,503,000	333,270,000	33,327,000	1,014,100,000	101,410,000	101,410,000	101,410,000	101,410,000	101,410,000	101,410,000	101,410,000	101,410,000	101,410,000	101,410,000	202,820,000
			4층	6	661,614,000	340,532,727	34,053,273	1,036,200,000	103,620,000	103,620,000	103,620,000	103,620,000	103,620,000	103,620,000	103,620,000	103,620,000	103,620,000	103,620,000	207,240,000
			5층	6	675,661,000	347,762,727	34,776,273	1,058,200,000	105,820,000	105,820,000	105,820,000	105,820,000	105,820,000	105,820,000	105,820,000	105,820,000	105,820,000	105,820,000	211,640,000
			6~9층	24	686,196,000	353,185,455	35,318,545	1,074,700,000	107,470,000	107,470,000	107,470,000	107,470,000	107,470,000	107,470,000	107,470,000	107,470,000	107,470,000	107,470,000	214,940,000
			10~19층	60	696,796,000	358,640,000	35,864,000	1,091,300,000	109,130,000	109,130,000	109,130,000	109,130,000	109,130,000	109,130,000	109,130,000	109,130,000	109,130,000	109,130,000	218,260,000
			20~29층	54	703,819,000	362,255,455	36,225,545	1,102,300,000	110,230,000	110,230,000	110,230,000	110,230,000	110,230,000	110,230,000	110,230,000	110,230,000	110,230,000	110,230,000	220,460,000
		30~39층	57	710,843,000	365,870,000	36,587,000	1,113,300,000	111,330,000	111,330,000	111,330,000	111,330,000	111,330,000	111,330,000	111,330,000	111,330,000	111,330,000	111,330,000	222,660,000	
		101동 2호, 102동 3호, 103동 4호, 104동 4호, 105동 2호	40~44층	23	717,866,000	369,485,455	36,948,545	1,124,300,000	112,430,000	112,430,000	112,430,000	112,430,000	112,430,000	112,430,000	112,430,000	112,430,000	112,430,000	112,430,000	224,860,000
099.9742B	99B	102동 1호	3층	1	647,503,000	333,270,000	33,327,000	1,014,100,000	101,410,000	101,410,000	101,410,000	101,410,000	101,410,000	101,410,000	101,410,000	101,410,000	101,410,000	202,820,000	
			4층	1	661,614,000	340,532,727	34,053,273	1,036,200,000	103,620,000	103,620,000	103,620,000	103,620,000	103,620,000	103,620,000	103,620,000	103,620,000	103,620,000	207,240,000	
			5층	1	675,661,000	347,762,727	34,776,273	1,058,200,000	105,820,000	105,820,000	105,820,000	105,820,000	105,820,000	105,820,000	105,820,000	105,820,000	105,820,000	211,640,000	
			6~9층	4	686,196,000	353,185,455	35,318,545	1,074,700,000	107,470,000	107,470,000	107,470,000	107,470,000	107,470,000	107,470,000	107,470,000	107,470,000	107,470,000	107,470,000	214,940,000
			10~19층	10	696,796,000	358,640,000	35,864,000	1,091,300,000	109,130,000	109,130,000	109,130,000	109,130,000	109,130,000	109,130,000	109,130,000	109,130,000	109,130,000	109,130,000	218,260,000
			20~29층	9	703,819,000	362,255,455	36,225,545	1,102,300,000	110,230,000	110,230,000	110,230,000	110,230,000	110,230,000	110,230,000	110,230,000	110,230,000	110,230,000	110,230,000	220,460,000
			30~39층	10	710,843,000	365,870,000	36,587,000	1,113,300,000	111,330,000	111,330,000	111,330,000	111,330,000	111,330,000	111,330,000	111,330,000	111,330,000	111,330,000	111,330,000	222,660,000
		40~43층	4	717,866,000	369,485,455	36,948,545	1,124,300,000	112,430,000	112,430,000	112,430,000	112,430,000	112,430,000	112,430,000	112,430,000	112,430,000	112,430,000	224,860,000		
099.8725C	99C	103동 1호 104동 1호	10~19층	20	688,942,000	354,598,182	35,459,818	1,079,0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215,800,000	
			20~29층	18	695,902,000	358,180,000	35,818,000	1,089,900,000	108,990,000	108,990,000	108,990,000	108,990,000	108,990,000	108,990,000	108,990,000	108,990,000	108,990,000	108,990,000	217,980,000

주택형	타입	동/라인	층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10%)	2차(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 시	2022.01.24	2022.06.13	2022.12.13	2023.05.15	2023.10.13	2024.03.13	2024.08.13		입주지정일
099.0000T	99T1	103 1호 104동 1호	4층	2	665,190,000	342,372,727	34,237,273	1,041,800,000	104,180,000	104,180,000	104,180,000	104,180,000	104,180,000	104,180,000	104,180,000	104,180,000	104,180,000	208,360,000
			7층	2	689,772,000	355,025,455	35,502,545	1,080,30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99T2	103동 1호 104동 1호	2층	1	637,032,000	327,880,000	32,788,000	997,700,000	99,770,000	99,770,000	99,770,000	99,770,000	99,770,000	99,770,000	99,770,000	99,770,000	99,770,000	199,540,000
			5층	2	679,237,000	349,602,727	34,960,273	1,063,800,000	106,380,000	106,380,000	106,380,000	106,380,000	106,380,000	106,380,000	106,380,000	106,380,000	106,380,000	212,760,000
			8층	2	689,772,000	355,025,455	35,502,545	1,080,30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216,060,000
	99T3	103동 1호 104동 1호	3층	2	651,079,000	335,110,000	33,511,000	1,019,700,000	101,970,000	101,970,000	101,970,000	101,970,000	101,970,000	101,970,000	101,970,000	101,970,000	101,970,000	203,940,000
			6층	2	689,772,000	355,025,455	35,502,545	1,080,30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216,060,000
			9층	2	689,772,000	355,025,455	35,502,545	1,080,30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216,060,000
	103.9728T	103B1	109동 2,3호	7층	2	769,393,000	396,006,364	39,600,636	1,205,000,000	120,500,000	120,500,000	120,500,000	120,500,000	120,500,000	120,500,000	120,500,000	120,500,000	241,000,000
10층				2	787,909,000	405,537,273	40,553,727	1,234,000,000	123,400,000	123,400,000	123,400,000	123,400,000	123,400,000	123,400,000	123,400,000	123,400,000	246,800,000	
104.8719T	104E8	109동 5호	7층	1	770,670,000	396,663,636	39,666,364	1,207,000,000	120,700,000	120,700,000	120,700,000	120,700,000	120,700,000	120,700,000	120,700,000	120,700,000	241,400,000	
			8층	1	771,947,000	397,320,909	39,732,091	1,209,000,000	120,900,000	120,900,000	120,900,000	120,900,000	120,900,000	120,900,000	120,900,000	120,900,000	241,800,000	
		109동 2,3호	9층	2	777,055,000	399,950,000	39,995,000	1,217,000,000	121,700,000	121,700,000	121,700,000	121,700,000	121,700,000	121,700,000	121,700,000	121,700,000	243,400,000	
105.0454T	105E2	109동 2,3호	5층	2	759,177,000	390,748,182	39,074,818	1,189,000,000	118,900,000	118,900,000	118,900,000	118,900,000	118,900,000	118,900,000	118,900,000	118,900,000	237,800,000	
		109동 1,4,5호	6층	3	764,285,000	393,377,273	39,337,272	1,197,000,000	119,700,000	119,700,000	119,700,000	119,700,000	119,700,000	119,700,000	119,700,000	119,700,000	239,400,000	
107.0657T	107T1	109동 1,2,3,4,5,6호	1층	6	858,783,000	442,015,455	44,201,545	1,345,0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269,000,000	
107.9607T	107T2	109동 1,2,3,4,5,6호	2층	6	815,365,000	419,668,182	41,966,818	1,277,000,000	127,700,000	127,700,000	127,700,000	127,700,000	127,700,000	127,700,000	127,700,000	127,700,000	255,400,000	
111.3754T	111E1	109동 2,3호	4층	2	793,017,000	408,166,364	40,816,636	1,242,000,000	124,200,000	124,200,000	124,200,000	124,200,000	124,200,000	124,200,000	124,200,000	124,200,000	248,400,000	
		109동 1,4,5호	5층	3	798,125,000	410,795,455	41,079,545	1,250,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250,000,000	
112.6599T	112E2	109동 2,3호	6층	2	808,341,000	416,053,636	41,605,364	1,266,000,000	126,600,000	126,600,000	126,600,000	126,600,000	126,600,000	126,600,000	126,600,000	126,600,000	253,200,000	
		109동 1,4호	7층	2	813,449,000	418,682,727	41,868,273	1,274,000,000	127,400,000	127,400,000	127,400,000	127,400,000	127,400,000	127,400,000	127,400,000	127,400,000	254,800,000	
118.9899T	118T3	109동 1,2,3,4,5,6호	3층	6	875,384,000	450,560,000	45,056,000	1,371,000,000	137,100,000	137,100,000	137,100,000	137,100,000	137,100,000	137,100,000	137,100,000	137,100,000	274,200,000	
		109동 1,4,5,6호	4층	4	856,229,000	440,700,909	44,070,091	1,341,0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268,200,000	
133.4990P	133P	106동 1호	29층	1	1,348,768,000	694,210,909	69,421,091	2,112,400,000	211,240,000	211,240,000	211,240,000	211,240,000	211,240,000	211,240,000	211,240,000	211,240,000	422,480,000	
144.6744P	144P	103동 1호 104동 1호	29층	2	1,426,409,000	734,173,636	73,417,364	2,234,000,000	223,400,000	223,400,000	223,400,000	223,400,000	223,400,000	223,400,000	223,400,000	223,400,000	446,800,000	
151.3362P	151P	102동 1호	44층	1	1,518,928,000	781,792,727	78,179,273	2,378,900,000	237,890,000	237,890,000	237,890,000	237,890,000	237,890,000	237,890,000	237,890,000	237,890,000	475,780,000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공급면적(㎡) 또는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84.0000A	084.7098B	084.9964C	084.9559D	097.6414T	099.7748A	099.9742B	099.8725C	099.0000T	103.9728T
건본주택 등 약식표기	84A1, 84A2	84B	84C	84D	97Tb3	99A	99B	99C	99T1, 99T2, 99T3	103Tb1

주택형(㎡)	104.8719T	105.0454T	107.0657T	107.9607T	111.3754T	112.6599T	118.9899T	133.4990P	144.6744P	151.3362P
건본주택 등 약식표기	104Ta3	105Tb2	107T1	107T2	111Tc1	112Ta2	118T3	133P	144P	151P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약식표기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주택형별로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제작물도 동일하게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상기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호별, 층별 등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분양마케팅사 등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복세 통합)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과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I, 플러스옵션 II(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주방 가전, 후퍼옴틱 열차단필름,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템클라인)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수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정하여 추정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수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상기 타입 중 전용 84A1, 84A2, 99T1, 99T2, 99T3는 타입별 면적 및 구조가 상이하나, 청약신청시 전용 84.0000A(84A1, 84A2), 99.0000T(99T1, 99T2, 99T3) 균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타입별로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계획되어 있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각 용도별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공동주택 각 형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일부 세대에 포함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법령에 따른 공부철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기타 공용면적 또한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대피공간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고,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일 종료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선납할인은 상기 중도금 약정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선납할인 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치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관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태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1순위 청약 자격은 ①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②세대주 ③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았신 분 ④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아닌 분이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와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되며(기타지역)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청약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태로 총, 동, 호 구분 없이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2순위로만 청약 가능) -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됩니다.(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85㎡이하 주택은 가점제 100% 우선공급, 85㎡초과 주택은 가점제 50% 우선공급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청약 신청 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 (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유형으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청약자 (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은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외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여야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하고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에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 요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예금 가입자 주택규모 변경(모집공고 전일까지 큰 주택규모 예치금액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저축 가입자 청약예금으로 변경(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부금 가입자 청약예금으로 변경(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85㎡ 초과 주택형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신청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②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지역 간 전입(모집공고 당일까지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 시 1순위 청약접수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세대주 변경(모집공고 당일까지 세대주 변경 시 1순위 청약접수 가능함) ▪ 지역간 전입(모집공고 당일까지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시 1순위(기타지역) 청약접수 가능함] ③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금액 차액발생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신청 접수 시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②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④ 청약 시 가입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가입하여야 하며, 청약 이후 변동 사항 발생 시 당첨자는 건본주택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 관련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전용면적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100%)로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점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해당지역]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 / [기타지역] 인천광역시 2년 미만,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전용면적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 (5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2주택("분양권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미만, 지역별/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구분	인천광역시 (또는 기타 광역시)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비고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②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p>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우주택기간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input type="checkbox"/>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점	0명	5	4명	25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표등·초본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input type="checkbox"/> 출입국사실증명원 <input type="checkbox"/>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서류 ① 만 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②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 상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input type="checkbox"/>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점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p>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정제로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정제로, 나머지 5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 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본 주택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50%를 우선공급하며, 우선공급 낙첨자와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 (서울특별시, 경기도)를 대상으로 50%를 공급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주택형태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개별조회가 가능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 예비입주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예비입주자 지위기간 동안 분양 홈페이지에 명단 게시)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 (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2)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주택공유지분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3)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유지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4)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5)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6)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및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임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및 사업계획 (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 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주택형별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연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내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등” 가격 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이하인 1호 또는 1주택(“소형·저가주택등”)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현재 : “소형·저가주택등” 소유자) : 임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등”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등”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등”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가) 임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임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임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21.11.15(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2순위	2021.11.16(화) 09:00~17:30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가정환경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 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숲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p>[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청약 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청약 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p>[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p> <p>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 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 신청」 → 「APT청약 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p> <p>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 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 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p>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I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일정 및 계약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1.11.22(월)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및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12.09.(목)~2021.12.20(월) (10:00~16:00)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도자이 더 스타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4-7번지)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건본주택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공급신청한 다른 주택의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자 선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홈페이지(<https://xi.co.kr/sd2>)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11.22.(월) ~ 2021.12.01.(수)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11.22.(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서류 제출 안내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정당 당첨자
제출기간	2021.11.25(목)~2021.12.03(금), 9일간
제출방법	건본주택 방문접수
제출장소	송도자이 더 스타 건본주택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4-7번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류 제출 방법은 방문 제출이 아닌 등기우편 제출 등의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 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합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에 필히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봅니다)

■ 당첨자 서류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공동서류	○		①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②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③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④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⑤출입국 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⑥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표초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⑦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⑧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⑨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⑩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⑪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⑫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부적격 통보받은 자		○	⑬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자속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
		○	①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 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외의 지역 : 6개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단,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가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당첨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발급기준	구비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본인 계약 시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개별 통지)
		○		• 계약금 (우통장 입금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본인발급용
		○	본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본인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1통 (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전자수입인지 구매)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제3자)	○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건본주택 비치)
	○		본인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추가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본인발급용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또는 대리인 서명)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 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신한은행	140-013-613947	㈜우궁화신탁
분양대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1차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101동 401호 당첨자가 흥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401흥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바랍니다.
- 분양대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계좌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세대별로 상이하하며, 향후 **모계좌(신한은행, 140-013-613960 예금주: ㈜우궁화신탁)**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또한, 약정일자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상기 해당 회차별 납부일에 따라 순서대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계약체결 기간 내에 건본주택 방문인원이 제한되오니 당첨자는 반드시 공급계약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건본주택 방문을 예약하지 않은 당첨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는 건본주택 입장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절차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건본주택 내 체류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계약진행 등의 시간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건본주택에 제출하여 부적격당첨 소명기간(7일)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유지됩니다.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정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입주금 및 금융비용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①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② 가정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주민등록 범위외 및 청약 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환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자 선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기반시설 및 혐오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건물,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주변 공동주택 및 시설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정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합니다.
- 사용승인일 이전 잔금 납부 시 취득세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은 이차후불제 조건으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주택형별로 계약금(공급금액의 2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신청기간은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신청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이자의 대납 의무가 없고, 신학계좌 잔고의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동의 절차에 의하여 사업주체의 명의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대출이자를 자금집행한다. 단,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지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용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의 계좌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도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 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도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와 분양상당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법인은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 시	2022.06.13	입주지정일
84A1	33,220,000	3,322,000	3,322,000	26,576,000
84A2	33,280,000	3,328,000	3,328,000	26,624,000
84B	33,220,000	3,322,000	3,322,000	26,576,000
84C	33,600,000	3,360,000	3,360,000	26,880,000
84D	33,640,000	3,364,000	3,364,000	26,912,000
97Tb3	38,430,000	3,843,000	3,843,000	30,744,000
99A	38,870,000	3,887,000	3,887,000	31,096,000
99B	39,180,000	3,918,000	3,918,000	31,344,000
99C	39,580,000	3,958,000	3,958,000	31,664,000
99T1	39,580,000	3,958,000	3,958,000	31,664,000
99T2	39,910,000	3,991,000	3,991,000	31,928,000
99T3	39,900,000	3,990,000	3,990,000	31,920,000
103Tb1	40,750,000	4,075,000	4,075,000	32,600,000
104Ta3	40,960,000	4,096,000	4,096,000	32,768,000
105Tb2	41,250,000	4,125,000	4,125,000	33,000,000
107T1	41,740,000	4,174,000	4,174,000	33,392,000
107T2	42,020,000	4,202,000	4,202,000	33,616,000
111Tc1	43,570,000	4,357,000	4,357,000	34,856,000
112Ta2	43,850,000	4,385,000	4,385,000	35,080,000
118T3	46,180,000	4,618,000	4,618,000	36,944,000
133P	53,330,000	5,333,000	5,333,000	42,664,000
144P	58,830,000	5,883,000	5,883,000	47,064,000
151P	60,950,000	6,095,000	6,095,000	48,760,000

2. 발코니 확장 공사 시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가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준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견본주택을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세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포양, 구조경도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강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거나 시공되나 시공되지 않는 발코니와 설치되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 제기 불가)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절한 강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출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전장 및 벽체 돌출, 우물전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3.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계약금	신한은행	140-013-613993	㈜무궁화신탁
발코니 확장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상기 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 플러스옵션 계좌와 별도입니다.(입금 시 유의 바람)

※ 발코니 확장금액 및 플러스옵션 금액은 분양주택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기간 내에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101동 2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견본주택으로 제출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 : 계좌는 세대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모계좌(신한은행 140-013-613993, 예금주 : ㈜무궁화신탁)**로 관리됩니다. 세대별 가상계좌는 공급계약서에 명기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는 약정일자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비 및 플러스옵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 및 플러스옵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더라도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까지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항목			타입(약식)													
	기본마감	옵션마감		84A1	84A2	84B	84C	84D	99A	99B	99C	99T1	99T2	99T3			
개별 옵션	• 현관중문	-	슬라이딩타입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 바닥재	강마루	선택1. 원목마루(조르다노,이테리)	선택1. 기본형	-	-	-	-	-	18,800,000	-	-	-	-	-	-	
				선택2. 거실확장형	17,200,000	17,500,000	16,000,000	17,100,000	17,600,000	18,500,000	19,900,000	19,900,000	19,400,000	19,600,000	19,200,000		
				선택3. 수납강화형	-	-	-	-	-	18,800,000	-	-	-	-	-	-	
			선택2. 원목마루(조르다노,이테리)+ 거실주방복도 유럽산 포셀린타일	선택1. 기본형	-	-	-	-	-	10,000,000	-	-	-	-	-	-	-
				선택2. 거실확장형	확장공간 포셀린타일	8,800,000	8,900,000	8,700,000	8,500,000	8,800,000	8,700,000	10,800,000	11,000,000	10,900,000	9,900,000	10,700,000	
					확장공간 원목가구	-	-	-	-	-	10,200,000	-	-	-	-	-	-
	선택3. 수납강화형	-	-	-	-	-	10,000,000	-	-	-	-	-	-	-			
	공간 특화	• 알파룸 특화	알파룸	선택1. AL 슬라이딩 도어		-	-	-	-	-	1,800,000	-	-	-	-	-	
				선택2. 거실 확장형		-	-	-	-	-	무상제공	1,850,000	1,590,000	1,590,000	3,620,000	1,570,000	
선택3. 수납 강화형(복도 팬트리, 안방 베타룸 포함)				-	-	-	-	-	1,340,000	-	-	-	-	-			
• 안방 드레스룸/ 부부욕실/현관창고		무상선택1. 부부욕실 강화형		-	-	-	-	-	택1	-	-	-	-	-	-		
	무상선택2. 안방 드레스룸 강화형		-	-	-	-	-	-	-	-	-	-	-	-			
마감 특화	• 마감재	현관/거실/ 복도 벽면	실크벽지	시트패널		1,300,000	1,500,000	1,400,000	1,900,000	1,500,000	1,900,000	1,800,000	1,400,000	1,600,000	1,500,000		
		거실(전후면)/ 복도 아트월	거실전면 유럽산 포셀린타일 그외 실크벽지	유럽산 포셀린타일(이테리,600*1200)		-	-	-	-	-	-	-	-	-	-		
	• 조명	거실	우물천장, 일반 직부등	선택1. 우물천장 간접조명, 특화 직부등	선택1. 기본형	-	-	-	-	-	2,200,000	-	-	-	-	-	
					선택2. 거실확장형	2,300,000	2,300,000	2,400,000	2,100,000	2,400,000	2,000,000	2,400,000	2,600,000	2,700,000	2,800,000	2,600,000	
					선택3. 수납강화형	-	-	-	-	-	2,200,000	-	-	-	-	-	
		평천장	조명없음	라인등	선택2. 건축화조명, 시트패널 천장	선택1. 기본형	-	-	-	-	-	6,100,000	-	-	-	-	-
						선택2. 거실확장형	-	-	-	-	-	7,100,000	5,500,000	6,500,000	6,200,000	7,400,000	6,200,000
						선택3. 수납강화형	-	-	-	-	-	6,100,000	-	-	-	-	-
	현관/거실/ 복도 벽면	평천장	단천장&라인등		-	-	-	-	-	-	-	-	-	-			
	거실/침실 커튼박스	조명없음	라인등		2,100,000	2,1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2,700,000	2,400,000	2,500,000	2,200,000	2,000,000	2,200,000		
침실	일반 직부등	특화 직부등		-	-	-	-	-	-	-	-	-	-	-			

구분		항목		타입(약식)													
		기본마감	옵션마감	84A1	84A2	84B	84C	84D	99A	99B	99C	99T1	99T2	99T3			
주방 특화	• 선택1. 고급형 주방	가구	장식장 미제공	장식장	3,500,000	3,500,000	2,100,000	1,700,000	-	-	1,700,000	-	-	-	-		
			일반 여닫이 개폐	친환경시트 도어마감, 유럽산 하드웨어, 전동플랩 상부장													
			국산 싱크볼	알토(이태리)													
			보조주방 미제공	보조주방가구(엔지니어드스톤상판,손빨래볼 포함)													
		마감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유럽산포셀린타일주방벽	세라믹패널 주방상판/벽													
			실크벽지	시트패널	16,500,000	16,500,000	16,900,000	17,700,000	18,500,000	19,900,000	18,400,000	18,400,000	18,400,000	18,400,000	18,400,000	18,400,000	
			평천장	우물천장 & 시트패널 천장													
			평천장	우물천장 & 시트패널 천장													
	설비	국산 후드	팔맥(이태리)														
	조명	일반 조명	우물천장 간접조명, 특화조명														
	• 선택2. 수입형 주방	가구	장식장 미제공	장식장	3,500,000	3,500,000	2,100,000	1,700,000	-	-	1,700,000	-	-	-	-		
			일반 여닫이 개폐	노빌리아(독일)													
			국산 싱크볼	알토(이태리)													
			보조주방 미제공	보조주방가구(엔지니어드스톤상판,손빨래볼 포함)													
마감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유럽산포셀린타일주방벽	세라믹패널 주방상판/벽														
		실크벽지	시트패널	35,700,000	35,700,000	35,100,000	36,800,000	37,600,000	40,400,000	38,000,000	38,600,000	38,600,000	38,800,000	38,600,000	38,600,000		
		평천장	우물천장 & 시트패널 천장														
		평천장	우물천장 & 시트패널 천장														
설비	국산 후드	팔맥(이태리)															
조명	일반 조명	우물천장 간접조명, 특화조명															
욕실 특화	• 선택1. 고급형 욕실	수전	일반형	아메리칸스탠다드	7,500,000	7,500,000	7,500,000	8,000,000	7,700,000	7,800,000	7,400,000	7,500,000	7,500,000	7,500,000	7,500,000		
		도기(욕조 제외)	일반형	아메리칸스탠다드												선택1. 부부욕실 강화형	
		마감	벽/바닥 국산타일	벽/바닥 유럽산포셀린타일(이태리)													
			천장 ABS 판넬	천장 도장마감													
	• 선택2. 수입형 욕실	수전	도기(욕조 제외)	일반형	켈리(미국)	12,000,000	12,100,000	12,100,000	12,500,000	12,200,000	12,300,000	11,900,000	12,100,000	12,100,000	12,100,000		12,100,000
			마감	벽/바닥 국산타일	벽/바닥 유럽산포셀린타일(이태리)											선택1. 부부욕실 강화형	
				천장 ABS 판넬	천장 도장마감												
			문틀	부부욕실(또는 파우더공간) 슬라이딩 도어	선택2. 안방 드레스룸 강화형												
조명	일반등	간접조명, 특화조명															
전기쿱탑	3구 가스 쿱탑	하이브리드쿱탑(쿱체,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CIR-S3220FLBE)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인덕션 3구(LG, BEI3GTBI)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구분		항목		타입(약식)													
		기본마감	옵션마감	133P	144P	151P	97Tb3	103Tb1	104Ta3	105Tb2	107T1	107T2	111Tc1	112Ta2	118T3		
개별 옵션	• 현관중문	-	슬라이딩타입	2,700,000	2,700,000	2,7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 바닥재	강마루	선택1. 원목마루(조르다노,이테리)	23,400,000	25,700,000	26,500,000	19,900,000	21,100,000	22,000,000	22,500,000	22,300,000	22,300,000	22,500,000	23,400,000	24,500,000		
			선택2. 원목마루(조르다노,이테리)+ 거실주방복도 유럽산 포셀린타일	12,100,000	12,300,000	14,200,000	10,000,000	11,200,000	10,400,000	12,600,000	10,600,000	10,600,000	12,500,000	11,800,000	12,900,000		
공간 특화	• 알파룸 특화	알파룸	슬라이딩도어	2,120,000	2,120,000	2,630,000	-	-	-	-	-	-	-	-	-		
	• 안방 드레스룸/ 부부욕실/현관창고	무상선택1. 부부욕실 강화형		-	-	-	-	-	-	-	-	-	-	-	-		
		무상선택2. 안방 드레스룸 강화형		-	-	-	-	-	-	-	-	-	-	-	-		
마감 특화	• 마감재	현관/거실/ 복도 벽면	실크벽지	시트패널	2,000,000	3,400,000	3,6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900,000	1,9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거실(전후면)/ 복도 아트월	거실전면 유럽산 포셀린타일 그외 실크벽지	유럽산 포셀린타일(이테리,600*1200)													
	• 조명	거실	우물천장, 일반 직부등	선택1. 우물천장 간접조명, 특화 직부등	-	-	-	-	-	-	-	-	-	-	-	-	-
				선택2. 건축화조명, 시트패널 천장	7,500,000	7,500,000	8,300,000	5,800,000	5,800,000	7,400,000	5,800,000	7,500,000	7,600,000	5,800,000	7,400,000	7,400,000	
		현관/거실/ 복도 벽면	평천장	단천장&라인등	2,900,000	3,100,000	3,200,000	2,300,000	2,300,000	2,500,000	2,300,000	2,700,000	2,600,000	2,300,000	2,500,000	2,500,000	
		거실/침실 커튼박스	조명없음	라인등													
침실	일반 직부등	특화 직부등	-	-	-	3,600,000	3,600,000	3,600,000	3,600,000	3,300,000	3,300,000	3,600,000	3,600,000	3,600,000			
주방 특화	• 선택1. 고급형 주방	가구	장식장 미제공	장식장	-	-	-	3,600,000	3,600,000	3,600,000	3,600,000	3,300,000	3,300,000	3,600,000	3,600,000	3,600,000	
			일반 여닫이 개폐	친환경시트 도어마감, 유럽산 하드웨어, 전동플랩 상부장	-	-	-	-	-	-	-	-	-	-	-	-	
			국산 싱크볼	알토(이테리)	-	-	-	-	-	-	-	-	-	-	-	-	
			보주주방 미제공	보주조방가구(엔지니어드스톤상판,손빨래볼 포함)	-	-	-	-	-	-	-	-	-	-	-	-	
	마감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유럽산포셀린타일주방벽	세라믹패널 주방상판/벽	22,100,000	19,300,000	20,700,000	18,300,000	18,300,000	18,300,000	18,300,000	18,200,000	18,200,000	18,300,000	18,300,000	18,300,000		
			실크벽지													시트패널	
			평천장													우물천장 & 시트패널 천장	
	설비	국산 후드	팔맥(이테리)	-	-	-	-	-	-	-	-	-	-	-	-		
조명	일반 조명	우물천장 간접조명, 특화조명	-	-	-	-	-	-	-	-	-	-	-	-			

구분			항목		타입(약식)											
			기본마감	옵션마감	133P	144P	151P	97Tb3	103Tb1	104Ta3	105Tb2	107T1	107T2	111Tc1	112Ta2	118T3
• 선택2 수입형 주방	가구	장식장 미제공	장식장	-	-	-	3,600,000	3,600,000	3,600,000	3,600,000	3,300,000	3,300,000	3,600,000	3,600,000	3,600,000	
		일반 여닫이 캐페	노빌리아(독일)													
		국산 싱크볼	알토(이태리)													
		보조주방 미제공	보조주방가구(엔지니어드스톤상판,손빨래볼 포함)													
	마감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유럽산포셀린타일주방벽	세라믹패널 주방상판/벽													
		실크벽지	시트패널	44,800,000	38,000,000	42,4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평천장	우물천장 & 시트패널 천장													
	설비	국산 후드	팔맥(이태리)													
조명	일반 조명	우물천장 간접조명, 특화조명														
• 선택1 고급형 욕실	수전	일반형	아메리칸스탠다드													
		도기(욕조 제외)	일반형	아메리칸스탠다드												
	마감	벽/바닥 국산타일	벽/바닥 유럽산포셀린타일(이태리)	10,000,000	10,000,000	10,000,000	7,600,000	7,600,000	7,600,000	7,600,000	7,600,000	7,600,000	7,600,000	7,600,000	7,600,000	
		천장 ABS 판넬	천장 도장마감													
		문틀	부부욕실(또는 파우더공간) 슬라이딩 도어													
	조명	일반등	간접조명, 특화조명													
	• 선택2 수입형 욕실	수전	일반형	퀵라(미국)												
			도기(욕조 제외)	일반형	퀵라(미국)											
마감		벽/바닥 국산타일	벽/바닥 유럽산포셀린타일(이태리)	14,400,000	14,400,000	14,300,000	12,200,000	12,200,000	12,200,000	12,200,000	12,200,000	12,200,000	12,200,000	12,200,000	12,200,000	
		천장 ABS 판넬	천장 도장마감													
		문틀	부부욕실(또는 파우더공간) 슬라이딩 도어													
조명		일반등	간접조명, 특화조명													
전기쿵탑	3구 가스 쿵탑	하이브리드쿵탑(쿠첸,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CIR-S3220FLBE)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인덕션 3구(LG, BEI3GTBI)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 플러스옵션 I 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미선택시 중문틀은 시공되지 않으며,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서 계약시 형태, 제품사양 등에 교체 및 변경을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 목적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 옵션 I 선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플러스 옵션 안내문 등을 통해 계약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플러스 옵션 계약 전 반드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개별옵션 중 바닥재 미선택 시 일반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옵션 I 설치 위치 및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옵션 I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99A 타입 알파룸 특화 옵션 마감 중 거실확장형 선택시 알파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안방 드레스룸/부부욕실/현관창고는 99A 타입만 무상선택1(부부욕실 강화형)과 무상선택2(안방 드레스룸 강화형) 중 택1이 가능합니다.
- 151P 타입은 욕실 특화 선택시 부부욕실(또는 파우더공간) 슬라이딩 도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플러스옵션 I 납부비율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입금액	10%	10%	80%
납입시기	공급계약시	2022.07.14	입주지정일

■ 플러스옵션 I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플러스옵션 I 계약금	국민은행	735737-01-003957	화이트코리아(주)
플러스옵션 I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플러스옵션 I 납부계좌는 공동주택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비, 플러스옵션 II(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주방 가전, 후퍼오픈팅 열차단필름,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클라인)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옵션 I 금액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기간 내에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101동201호 당첨자가 홀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1홀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건본주택으로 제출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 : 계좌는 세대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모계좌(국민은행 735737-01-003957, 예금주 : 화이트코리아(주))**로 관리됩니다. 세대별 가상계좌는 공급계약서에 명기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이며, 상기 계좌 또는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옵션 I 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더라도 플러스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까지 원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옵션 II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VAT 포함)

제조사	타입	선택안	설치장소	총금액	계약금	중도금(1차)	중도금(2차)	잔금	비고	
					계약시	2022.07.14	2023.07.13	입주시		
LG전자	84A1, 84A2, 84B, 84C, 84D	선택1	거실+주방+침실1	5,340,000	534,000	2,136,000	2,130,000	540,000		
		선택2	거실+주방+침실1+침실3	6,621,000	662,000	2,648,000	2,640,000	671,000		
		선택3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355,000	835,000	3,342,000	3,340,000	838,000		
		선택4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9,632,000	963,000	3,852,000	3,850,000	967,000		
	99A	기본형	선택1	거실+주방+침실1	5,340,000	534,000	2,136,000	2,130,000	540,000	
			선택2	거실+주방+침실1+침실3	6,621,000	662,000	2,648,000	2,640,000	671,000	
			선택3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355,000	835,000	3,342,000	3,340,000	838,000	
			선택4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9,632,000	963,000	3,852,000	3,850,000	967,000	
		거실확장형	선택1	거실 2개+주방+침실1	6,910,000	691,000	2,764,000	2,760,000	695,000	
			선택2	거실 2개+주방+침실1+침실3	8,192,000	819,000	3,276,000	3,270,000	827,000	
선택3	거실 2개+주방+침실1+침실2+침실3		9,474,000	947,000	3,789,000	3,780,000	958,000			

제조사	타입	선택안	설치장소	총금액	계약금	중도금(1차)	중도금(2차)	잔금	비고
					계약시	2022.07.14	2023.07.13	입주시	
	99B, 99C	선택1	거실+주방+침실1	5,340,000	534,000	2,136,000	2,130,000	540,000	
		선택2	거실+주방+침실1+침실3	6,621,000	662,000	2,648,000	2,640,000	671,000	
		선택3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355,000	835,000	3,342,000	3,340,000	838,000	
		선택4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9,632,000	963,000	3,852,000	3,850,000	967,000	
	99T1, 99T2, 99T3	선택1	거실+주방+침실1	5,827,000	582,000	2,330,000	2,330,000	585,000	
		선택2	거실+주방+침실1+침실3	7,108,000	710,000	2,843,000	2,840,000	715,000	
		선택3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390,000	839,000	3,356,000	3,350,000	845,000	
		선택4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9,667,000	966,000	3,866,000	3,860,000	975,000	
	97Tb3, 103Tb1	선택1	거실+주방+침실1	5,827,000	582,000	2,330,000	2,330,000	585,000	
		선택2	거실+주방+침실1+침실2	7,108,000	710,000	2,843,000	2,840,000	715,000	
		선택3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390,000	839,000	3,356,000	3,350,000	845,000	
	104Ta3, 105Tb2, 107T1,107T2, 111Tc1, 112Ta2, 118T3	선택1	거실+주방+침실1	5,844,000	584,000	2,337,000	2,330,000	593,000	
		선택2	거실+주방+침실1+침실2	7,129,000	712,000	2,851,000	2,850,000	716,000	
		선택3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734,000	873,000	3,493,000	3,490,000	878,000	
	133P, 144P, 151P	선택1	거실 2개+주방+침실1	6,950,000	695,000	2,780,000	2,780,000	695,000	
		선택2	거실 2개+주방+침실1+침실2+침실3	9,841,000	984,000	3,937,000	3,936,000	984,000	
		선택3	거실 2개+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11,126,000	1,112,000	4,451,000	4,451,000	1,112,000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플러스 옵션 II 선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플러스 옵션 선택 안내문 등을 통해 계약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플러스 옵션 계약 전 반드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냉매배관은 기본으로 거실, 침실1(안방)에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는 별도의 냉매배관으로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99A 타입 기본형의 경우 플러스옵션 I 알파룸 특화 옵션에 대하여 옵션마감 선택3(수납 강화형)으로 선택 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4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알파룸 설치 불가)

2. 주방 가전

(단위 : 원 / VAT 포함)

품목	제조사	모델명	총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2.07.14	입주시	
광파오븐	LG전자	MZ385EBT	408,000	40,000	40,000	328,000	
식기세척기		DUB22SB2	1,176,000	117,000	117,000	942,000	
시그니처식기세척기		DBS12	2,460,000	246,000	246,000	1,968,000	
BIS냉장고(홈바형)		S715SI24B	6,168,000	616,000	616,000	4,936,000	
시그니처냉장고		S695RE23L	15,564,000	1,556,000	1,556,000	12,452,000	
오브제냉장고(4도어)		BC4S1AA1	3,576,000	357,000	357,000	2,862,000	
김치냉장고		K221PR14BL1(BR1)	1,272,000	127,000	127,000	1,018,000	
오브제김치냉장고(3도어)		BC3K1AA1	2,148,000	214,000	214,000	1,720,000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전 선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주방가전 선택 안내문 등을 통해 계약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방가전 계약 전 반드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다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다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3. 후퍼옵틱 열차단필름

(단위 : 원 / VAT 포함)

품목	타입(층)	총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2.07.14	입주시	
후퍼옵틱_열차단필름 (ceramic 50)	84A1	2,560,000	256,000	256,000	2,048,000	
	84A2	2,560,000	256,000	256,000	2,048,000	
	84B	2,250,000	225,000	225,000	1,800,000	
	84C	3,040,000	304,000	304,000	2,432,000	
	84D	2,910,000	291,000	291,000	2,328,000	
	99A	3,860,000	386,000	386,000	3,088,000	
	99B	3,250,000	325,000	325,000	2,600,000	
	99C	3,200,000	320,000	320,000	2,560,000	
	99T1	3,470,000	347,000	347,000	2,776,000	
	99T2	3,620,000	362,000	362,000	2,896,000	

품목	타입(층)	총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2.07.14	입주시	
	99T3	3,490,000	349,000	349,000	2,792,000	
	133P	5,490,000	549,000	549,000	4,392,000	
	144P	7,770,000	777,000	777,000	6,216,000	
	151P	6,910,000	691,000	691,000	5,528,000	
	97Tb3	3,260,000	326,000	326,000	2,608,000	
103Tb1	7층	3,560,000	356,000	356,000	2,848,000	
	10층	3,260,000	326,000	326,000	2,608,000	
	104Ta3	3,260,000	326,000	326,000	2,608,000	
	105Tb2	3,110,000	311,000	311,000	2,488,000	
	107T1, 107T2	3,560,000	356,000	356,000	2,848,000	
	111Tc1	3,260,000	326,000	326,000	2,608,000	
	112Ta2	3,260,000	326,000	326,000	2,608,000	
118T3	3층	3,560,000	356,000	356,000	2,848,000	
	4층	3,260,000	326,000	326,000	2,608,000	

- 열차단필름은 발코니가 있는 침실의 발코니창에만 시공되며, 유리크기가 필름폭(1,800mm)을 초과할 경우 가로방향 이어붙임으로 시공됩니다.
- 열차단필름의 특성상 야간에 점등 시 무지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클라인

(단위 : 원 / VAT 포함)

공급업체	품목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비고
자이에스앤디(주)	시스클라인	2대	선택1	거실, 주방	1,750,000	
			선택2	거실, 침실1	1,750,000	
		3대	선택3	거실, 주방, 침실1	2,625,000	
		5대	선택4	거실, 주방, 찡살1, 침실2, 침실3	4,375,000	

- 시스클라인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청정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는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클라인 구성품은 천장형공기청정기와 리모컨이며 천장형 공기청정기 1대당 제어용 리모컨 1대를 제공하오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알파룸은 설치 공간 부족으로 시스클라인 설치를 제외합니다.
- 발코니·대피공간(전열교환기 설치)과 면한 침실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시스템에어컨이 병렬배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II 선택 품목 납부계좌 안내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주방 가전, 후퍼옴틱 열차단필름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유상옵션(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주방 가전, 후퍼옴틱 열차단필름)	우리은행	계약자별 가상계좌 부여	화이트코리아산업(주)

- 유상옵션(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주방 가전, 후퍼옴틱 열차단필름) 납부계좌는 공동주택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비, 플러스옵션 I,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템 시스클라인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옵션 금액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기간 내에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101동2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견본주택으로 제출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 : 계좌는 세대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모계좌(우리은행 1005-804-245465, 예금주 : 화이트코리아산업(주))**로 관리됩니다. 세대별 가상계좌는 공급계약서에 명기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이며, 상기 계좌 또는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옵션 II 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더라도 플러스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까지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클라인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유상옵션(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클라인)	신한은행	계약자별 가상계좌 부여	자이에스앤디(주)

- 유상옵션(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클라인) 납부계좌는 공동주택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비, 플러스옵션 I,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주방 가전, 후퍼옴틱 열차단필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옵션 금액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 계좌는 세대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모계좌(신한은행 100-030-466930, 예금주 : 자이에스앤디(주))**로 관리됩니다. 세대별 공사비 납부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며, 공급계약서에 명기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클라인)은 시공 전문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주)에서 계약 체결 및 시공 예정으로 계좌가 상이합니다.
- 플러스옵션 II 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더라도 플러스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까지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다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다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제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1. 입주예정일 : 2024년 12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 발견 등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환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약 3일 전부터 약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 (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금 등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발송)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2. 입주자 사전 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3.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피트니스센터, 작은 도서관 등)은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 : 지하주차장 유효높이는 지하 1층 2.7m 이하 (택배차량은 지하 1층 까지만 진입 가능)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배드민턴장 1개소),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주민회의실, 키즈카페 등), 작은 도서관, 근린생활시설 등

■ 유의사항

일반사항	<p>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시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p> <p>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p> <p>CLUB XIAN은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CLUB XIAN 운영 홍보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운영 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세 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인 결의 등에 의해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CLUB XIAN요금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총당금 등 제반 운영비용을 포함하며, 관리수입으로 전액 귀속됩니다.</p> <p>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어려운 공용부분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은 준공도서에 따릅니다.</p> <p>각종 홍보물상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계획,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문주 등의 기타시설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또한 단지를 제외한 기타 사항 (개발계획, 주변건물 현황, 산, 조영, 외부식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각종 홍보물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세부계획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의 색상, 패턴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p> <p>각종 홍보물의 사진, 평면도, 이미지 등에는 전시품목 및 선택옵션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각종 홍보물에 영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p> <p>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발 예정사항까지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인허가	<p>각종 홍보물은 2021년 10월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p> <p>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이 2021년 6월 10일로 소망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p> <p>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p> <p>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하여 시공관리 예정입니다.</p> <p>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뽕칠, 페인트로 마감되며, 중동형태에 따라 석재와 뽕칠, 페인트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p> <p>도시계획시설(도로)에 따른 가감차로 관련하여 부지 내 동·서측을 횡단하는 보행도로는(3개소) 보행이 지장이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일반인이 항상 이용가능 하도록 개방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p> <p>일반분양시설인 복리시설의 대지지분은 “하나의 단지로 복리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로 공급됩니다.</p>
공동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p>단지가 바다와 인접해있으므로, 해풍, 해무, 태풍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단지 북측에는 36m 도로, 동측·서측·남측에는 23m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단지 남서측에는 21.5M 도로, 남동측에는 23M 도로, 북측에는 36M 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사업부지 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기부채납,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헨스 (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부지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정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p> <p>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p> <p>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p> <p>본 단지는 근린공원, 수변공원, 초등학교, 중학교, 상업시설이 인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본 단지 남동측에는 특별계획구역 (CN1, CN2, PL5, CP1)이 인접해 있으며 해당구역 내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타워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서측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와 남측 인천신항 및 배후단지 건설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단지 외부의 주변 도로 등은 현재 상황 또는 설치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p> <p>전력공급을 위한 배전선로가 사업부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기반시설 완료 후에는 연장하여 전력공급이 가능하나, 수급지정이 공동주택 출입구 쪽에 위치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p> <p>공동주택 외부에 돌출되는 태양광 집열판, 급·배기시설, 실외기 등의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시설의 위치 등을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학교	<p>초등학교는 (가칭)해양3초등학교 신설을 통해 배치될 예정이나 입주예정시기와 학교개교시기가 맞지 않을 경우 유입학생에 대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국공립어린이집	<p>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p> <p>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과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시행위탁자는 입주자 의견취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p>
다함께돌봄센터	<p>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연수구청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는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과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시행위탁자는 입주자 의견취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p>

	<p>동별 현황</p>	<p>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09동 1호 라인 측면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동의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내,외에 레벌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1동, 102동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며, 101동, 102동, 109동 남서측에는 수변공원이 위치하여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3, 108동 인근 및 109동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는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6동에는 클럽 클라우드 전용 엘리베이터가 별도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는 소음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지</p>	<p>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p>	<p>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존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 옥상층 102동, 103동, 104동, 108동 - 중계장치 설치 위치 : 옥상층 102동, 103동, 104동, 108동 및 지하1층 동전기실(103동, 104동, 109동) 일부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단지 모형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육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교통영향평가 이행에 따라 단지 내 설치되는 완화차로 조성구간은 준공 시점에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공부상 대지면적에서 일부 면적이 제척되어 대지지분이 산정되고 향후 지적확정측량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결로방지를 위해 실외기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외관계획	<p>외장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비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옥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p> <p>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종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p> <p>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세대별 커튼월바,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아파트 일부 동 측벽에는 금속 마감 및 조명이 설치됩니다.</p> <p>외벽에 유리마감재(커튼월록) 및 몰딩이 설치되며 면적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동 위치에 따라 일부동은 빛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p>
	공용시설	<p>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지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p> <p>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p> <p>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자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합니다.</p> <p>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 GX룸, 라운지, 작은도서관, 카페테리아, 키즈카페 등) 및 부속동(경로당 등) 및 일부 공용부(지하 공용창고(없는 경우 제외) 등)에는 입주자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4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 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p> <p>커뮤니티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약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단지 내 시설물 (에어컨 실외기, 쓰레기 분리수거함, DA 등)의 설치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주민공동시설(CLUB XIAN) 내 커뮤니티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위탁관리업체와 운영예정인 아이돌봄(짜깁악어), 식음서비스(아워홈) 특화 프로그램 램은 사업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와 전문위탁관리업체의 협의과정에서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p> <p>특화 프로그램 이용시 개별비용 발생 및 개별세대에 관리비로 부과되며, 전문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될 경우 서비스 운영 종료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공된 공사부위, 추가 설치된 전자제품 및 집기/비품 등은 주민공동시설 내에서 철거 및 반납되며, 입주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주민공동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되거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p> <p>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p>
	공용설비 및 시스템	<p>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p> <p>지하층 엘리베이터출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p> <p>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p> <p>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p> <p>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p> <p>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 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자연환풍,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기계실, 환풍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p> <p>세대창고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세대창고는 각 동의 지하층(지하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 형태, 디자인은 단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주차장	<p>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p> <p>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2,351대, 근린생활시설 63대, 총 2,414대(경차 및 장애인주차, 전기차충전 주차구획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p> <p>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동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123개소(근생 급속1, 완속1 포함, 급속25대 완속 98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지하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p>
	근린생활시설	<p>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01동 지하2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고가수조,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전용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p>
	평면	<p>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p> <p>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본 아파트 세대의 거실 천장 높이는 2400mm로 시공됩니다.(펜트하우스 세대는 2700mm)</p> <p>입주 시 세대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p> <p>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p> <p>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p> <p>1층 및 필로티/부대시설 상부세대는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대피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107T1 타입 등 109동 4층 미만인 층의 세대 포함)</p> <p>84A1층 105동 3호, 106동 2호 거실의 아트월은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 시공됩니다.</p>
단위세대	발코니	<p>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홍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p> <p>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p> <p>또한, 발코니 외부 축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p> <p>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p> <p>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거나 별도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통한 인접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p> <p>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p> <p>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상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p>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p>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쪽으로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기본형(비확장) 세대에서 전체 발코니가 연결되어진 경우 각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창호	<p>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p> <p>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거실 및 안방의 외부창호는 유리난간이중창으로 이삿짐 차량을 이용한 운반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p> <p>타입별로 창호높이 및 천장의 형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일부타입 주방 및 욕실의 외부창호는 삼중유리단창으로 시공되며, 이 경우 개폐창은 미닫이방식이 아닌 여닫이방식으로 적용되고 개폐창은 불투시형으로 적용됩니다.</p>

<p>욕외공간 (테라스)</p>	<p>단위세대의 욕외공간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요구시 개방하여야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집합건물법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욕외공간 바닥은 합성목재데크 마감이며, 바닥레벨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비확장 세대의 욕외공간 바닥은 무근콘크리트로 마감됨) 최상층 테라스 공간에는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 될 수 있으며, 조방관·소용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라스 욕외용 수전이 설치 된 경우에는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욕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 이 노출되어 시공될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외공간 진입을 위해 단위세대 발코니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욕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준공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욕외공간 건축 기본마감(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합성목재데크 마감)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옥상녹화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욕외공간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공사 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욕외공간에는 조경용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하부세대에 배수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부위에 물막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09동(테라스하우스)은 동일타입임에도 입면변화에 따라서 테라스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가구 및 마감재</p>	<p>블락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마루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개폐방향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인접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욕창호, 시트판별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시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시공 디테일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선반은 본공사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형 주방 옵션선택시에는 인덕션, 하일라이트 등 전기쿡탑 적용으로 인해 가스 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경우 가스쿡탑 설치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상옵션 품목인 원목마루는 자재 특성상 용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상, 무늬,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습니다.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공사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다용도실 도어에는 소음 등의 방지를 위해 문틀에 가스켓이 시공됩니다.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 (주방가구, 냉장고장, 붙박이장, 세탁선반,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확장시 제공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옵션 등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옵션 등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방TV폰 배선이 후면기구에 연결됨에 따라 노출되어 시공됩니다.</p>
<p>전기기계설비</p>	<p>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선택 옵션에 따라 독립형 렌지후드가 설치될 경우, 자동식소화가 설치를 위해 렌지후드 인근에 천장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소방인허가청 요구조건에 따라 3~10층 구간에는 침실 등 거주공간 내에 완강기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팬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임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기본 냉매매립배관은 천장 속 노출 냉매배관으로 변경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설치 공사비는 변경공사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기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클라인 선택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 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층 세대 하부에 각종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외벽 또는 실내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침실, 알파룸, 베타룸이 옵션 선택에 따라 대형 드레스룸 및 펜트리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원패스카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 열원을 사용한 중앙 공급 방식이 적용 됩니다.</p>

<p>건본주택</p>	<p>건본주택</p>	<p>건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건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클라인,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건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점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p> <p>건본주택은 설치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저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p> <p>건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건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건본주택 건립 타입인 84㎡A1타입은 스타일옵션 중 내추럴스타일로, 99㎡A타입은 모던스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p> <p>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GS건설 표준화조명이 설치됩니다.</p> <p>사이버 건본주택 단위세대 조명은 색온도 3500K적용되며, 사이버 건본주택에서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가구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 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 온도와 다를 수 있음)</p> <p>사이버 건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p> <p>사이버 건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5항 및 「사이버 건본주택 운용기준」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합한 절차로 사이버 건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건본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 주체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p>
-------------	-------------	--

□ 기타 유의사항

-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청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구분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p>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p>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p>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p>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지역난방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p>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p>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건물관련 인증서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명: 송도랜드마르시티 A17블록 공동주택(주거부분) 2. 신청자: 화이트로리아㈜ 3. 대시위차: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6-11 4. 상능등급</p>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가. 소용 관련 등급</th> <th colspan="2">다. 환경 관련 등급</th> </tr> <tr> <td>1. 생활충족률</td> <td>성능등급</td> <td>20. 환경친화적 건축</td> <td>성능등급</td> </tr> <tr> <td>2. 생활충족률 차등성</td> <td>***</td> <td>21. 자연친화적 건축</td> <td>*</td> </tr> <tr> <td>3. 세대 간 일체성의 사용성</td> <td>**</td> <td>22. 친환경적 건축</td> <td>*</td> </tr> <tr> <td>4. 교통소용(도보,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용도</td> <td>*</td> <td>23. 비오름 조성</td> <td>**</td> </tr> <tr> <td>5. 화장실 급배수 소용</td> <td>***</td> <td>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율 제곱의 적용</td> <td>***</td> </tr> <tr> <td></td> <td></td> <td>25. 차양 설치율 확보</td> <td>***</td> </tr> <tr> <td></td> <td></td> <td>26. 단열재대 환기성능 확보</td> <td>***</td> </tr> <tr> <td></td> <td></td> <td>27. 자동차도정차시 설치 수준</td> <td>***</td> </tr> </table> <p>나. 구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 <td>1. 내구성</td> <td>**</td> </tr> <tr> <td>2. 기밀성</td> <td>***</td> </tr> <tr> <td>3. 수밀방수성</td> <td>**</td> </tr> <tr> <td>4. 수리방수성</td> <td>**</td> </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 <td>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td> <td>성능등급</td> </tr> <tr> <td>2. 조도권 지리적 환경 지형</td> <td>***</td> </tr> <tr> <td>3. 조도권 지형지형 특성</td> <td>***</td> </tr> <tr> <td>4. 동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td> <td>***</td> </tr> <tr> <td>5. 여타의 성능</td> <td>***</td> </tr> <tr> <td>6. 여타의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td> <td>*</td> </tr> <tr> <td>7. 소·진동에너지 이용</td> <td>***</td> </tr> <tr> <td>8. 조도권 에너지절감 기술의 적용</td> <td>**</td> </tr> <tr> <td>9. 조도권 보존율 확보 및 환경 친화적 건축의 사용 금지</td> <td>*</td> </tr> <tr> <td>10. 환경친화적 재료(타이)의 사용</td> <td>***</td> </tr> <tr> <td>11. 저탄소 시공의 시공</td> <td>***</td> </tr> <tr> <td>12. 저탄소화 자재의 사용</td> <td>***</td> </tr> <tr> <td>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td> <td>***</td> </tr> <tr> <td>14. 녹색건축재료 적용 비율</td> <td>**</td> </tr> <tr> <td>15. 저탄소화 자재의 보급률</td> <td>***</td> </tr> <tr> <td>16. 빛공해</td> <td>*</td> </tr> <tr> <td>17. 빛공해 완화수용 이용</td> <td>***</td> </tr> <tr> <td>18. 절수용 기기 사용</td> <td>**</td> </tr> <tr> <td>19. 물 사용량 모니터링</td> <td>**</td> </tr> </table>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1년 10월 15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가. 소용 관련 등급		다. 환경 관련 등급		1. 생활충족률	성능등급	20. 환경친화적 건축	성능등급	2. 생활충족률 차등성	***	21. 자연친화적 건축	*	3. 세대 간 일체성의 사용성	**	22. 친환경적 건축	*	4. 교통소용(도보,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용도	*	23. 비오름 조성	**	5. 화장실 급배수 소용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율 제곱의 적용	***			25. 차양 설치율 확보	***			26. 단열재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차도정차시 설치 수준	***	1. 내구성	**	2. 기밀성	***	3. 수밀방수성	**	4. 수리방수성	**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성능등급	2. 조도권 지리적 환경 지형	***	3. 조도권 지형지형 특성	***	4. 동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여타의 성능	***	6. 여타의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소·진동에너지 이용	***	8. 조도권 에너지절감 기술의 적용	**	9. 조도권 보존율 확보 및 환경 친화적 건축의 사용 금지	*	10. 환경친화적 재료(타이)의 사용	***	11. 저탄소 시공의 시공	***	12. 저탄소화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재료 적용 비율	**	15. 저탄소화 자재의 보급률	***	16. 빛공해	*	17. 빛공해 완화수용 이용	***	18. 절수용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p style="text-align: center;">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건축물 개요]</p> <p>건축물명: 송도랜드마르시티 A17블록 공동주택 (주거부분) 건축주: 화이트로리아㈜ 준공(예정)일: 2024년 10월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6-11 층수: 지하 2층, 지상 44층 / 1533세대 면적: 281,273.525㎡ 건축물의 주변 용도: 공동주택 및 주택관리시설 설계자: ㈜디에이그린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p> <p>[인증 개요]</p> <p>인증번호: G-SEED-P-2021-1047-7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1.10.15. - 사용승인일</p> <p>[인증 등급]</p> <p>인증등급: 우수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78호 환경부고시 제2021-66호</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분야별평가]</p> <p style="text-align: right;">중등등급 ***</p> <table border="1"> <tr> <td>토지이용 및 교통</td> <td>33%</td> </tr> <tr> <td>에너지 및 환경오염</td> <td>59%</td> </tr> <tr> <td>재료 및 자원</td> <td>76%</td> </tr> <tr> <td>물순환관리</td> <td>71%</td> </tr> <tr> <td>유지관리</td> <td>100%</td> </tr> <tr> <td>생태환경</td> <td>27%</td> </tr> <tr> <td>실내환경</td> <td>67%</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10월 15일</p> <p style="text-align: center;">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p>	토지이용 및 교통	33%	에너지 및 환경오염	59%	재료 및 자원	76%	물순환관리	71%	유지관리	100%	생태환경	27%	실내환경	67%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0.></p>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건축물 개요</th> <th colspan="2">인증 개요</th> </tr> <tr> <td>건축물명</td> <td>송도랜드마르시티 A17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td> <td>인증번호</td> <td>21-주-에-1-0291</td> </tr> <tr> <td>준공연도</td> <td>2024/001</td> <td>평가자</td> <td>경승환</td> </tr> <tr> <td>주소</td> <td>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6-11</td> <td>인증기관</td> <td>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td> </tr> <tr> <td>층수</td> <td>지하 2층 지상 44층(9개동)</td> <td>운영기관</td> <td>한국에너지공단</td> </tr> <tr> <td>연면적</td> <td>287910.7197(㎡)</td> <td>유효기간</td> <td>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td> </tr> <tr> <td>건축물의 주변 용도</td> <td>공동주택</td> <td></td> <td></td> </tr> <tr> <td>설계자</td> <td>(주)디에이그린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td> <td></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인증등급: 1+등급</p>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p> <table border="1"> <tr> <th>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th> <th>요구량</th> <th>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th> <th>등급</th> <th>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kg/㎡·년)</th> <th>비율량</th> </tr> <tr> <td>에너지저소비량 건축실적</td> <td>84.8</td> <td>에너지효율</td> <td>1+</td> <td>48</td> <td>41.7</td> </tr> <tr> <td>에너지저소비량 건축실적</td> <td></td> <td>에너지효율</td> <td></td> <td>56</td> <td></td> </tr> <tr> <td></td> <td></td> <td>에너지효율</td> <td></td> <td>64</td> <td></td> </tr> <tr> <td></td> <td></td> <td>에너지효율</td> <td></td> <td>72</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th> <th>1차 에너지소요량(kWh/㎡·년)</th> <th>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kg/㎡·년)</th> </tr> <tr> <td>난방</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r> <tr> <td>냉방</td> <td>43.3</td> <td>54.3</td> <td>40.7</td> <td>9.1</td> </tr> <tr> <td>급탕</td> <td>30.7</td> <td>36.6</td> <td>26.9</td> <td>6.0</td> </tr> <tr> <td>조명</td> <td>10.8</td> <td>10.2</td> <td>28.2</td> <td>4.8</td> </tr> <tr> <td>합계</td> <td>84.8</td> <td>105.0</td> <td>106.4</td> <td>21.7</td> </tr> </table> <p>■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난방, 냉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연화,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p> <p>* 이 인증은 냉방설비() 설치와 [V] 설치되지 않음에 따라 인증을 받았습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1년 08월 13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송도랜드마르시티 A17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21-주-에-1-0291	준공연도	2024/001	평가자	경승환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6-11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층수	지하 2층 지상 44층(9개동)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287910.7197(㎡)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변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디에이그린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비율량	에너지저소비량 건축실적	84.8	에너지효율	1+	48	41.7	에너지저소비량 건축실적		에너지효율		56				에너지효율		64				에너지효율		72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난방	0.0	0.0	0.0	0.0	냉방	43.3	54.3	40.7	9.1	급탕	30.7	36.6	26.9	6.0	조명	10.8	10.2	28.2	4.8	합계	84.8	105.0	106.4	21.7
가. 소용 관련 등급		다. 환경 관련 등급																																																																																																																																																																																												
1. 생활충족률	성능등급	20. 환경친화적 건축	성능등급																																																																																																																																																																																											
2. 생활충족률 차등성	***	21. 자연친화적 건축	*																																																																																																																																																																																											
3. 세대 간 일체성의 사용성	**	22. 친환경적 건축	*																																																																																																																																																																																											
4. 교통소용(도보,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용도	*	23. 비오름 조성	**																																																																																																																																																																																											
5. 화장실 급배수 소용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율 제곱의 적용	***																																																																																																																																																																																											
		25. 차양 설치율 확보	***																																																																																																																																																																																											
		26. 단열재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차도정차시 설치 수준	***																																																																																																																																																																																											
1. 내구성	**																																																																																																																																																																																													
2. 기밀성	***																																																																																																																																																																																													
3. 수밀방수성	**																																																																																																																																																																																													
4. 수리방수성	**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성능등급																																																																																																																																																																																													
2. 조도권 지리적 환경 지형	***																																																																																																																																																																																													
3. 조도권 지형지형 특성	***																																																																																																																																																																																													
4. 동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여타의 성능	***																																																																																																																																																																																													
6. 여타의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소·진동에너지 이용	***																																																																																																																																																																																													
8. 조도권 에너지절감 기술의 적용	**																																																																																																																																																																																													
9. 조도권 보존율 확보 및 환경 친화적 건축의 사용 금지	*																																																																																																																																																																																													
10. 환경친화적 재료(타이)의 사용	***																																																																																																																																																																																													
11. 저탄소 시공의 시공	***																																																																																																																																																																																													
12. 저탄소화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재료 적용 비율	**																																																																																																																																																																																													
15. 저탄소화 자재의 보급률	***																																																																																																																																																																																													
16. 빛공해	*																																																																																																																																																																																													
17. 빛공해 완화수용 이용	***																																																																																																																																																																																													
18. 절수용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토지이용 및 교통	33%																																																																																																																																																																																													
에너지 및 환경오염	59%																																																																																																																																																																																													
재료 및 자원	76%																																																																																																																																																																																													
물순환관리	71%																																																																																																																																																																																													
유지관리	100%																																																																																																																																																																																													
생태환경	27%																																																																																																																																																																																													
실내환경	67%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송도랜드마르시티 A17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21-주-에-1-0291																																																																																																																																																																																											
준공연도	2024/001	평가자	경승환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6-11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층수	지하 2층 지상 44층(9개동)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287910.7197(㎡)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변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디에이그린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비율량																																																																																																																																																																																									
에너지저소비량 건축실적	84.8	에너지효율	1+	48	41.7																																																																																																																																																																																									
에너지저소비량 건축실적		에너지효율		56																																																																																																																																																																																										
		에너지효율		64																																																																																																																																																																																										
		에너지효율		72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난방	0.0	0.0	0.0	0.0																																																																																																																																																																																										
냉방	43.3	54.3	40.7	9.1																																																																																																																																																																																										
급탕	30.7	36.6	26.9	6.0																																																																																																																																																																																										
조명	10.8	10.2	28.2	4.8																																																																																																																																																																																										
합계	84.8	105.0	106.4	21.7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구분	내용
등급	수정 메르칼리 진도 VII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VII)으로 표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1-101-0010800 호	₩1,197,630,32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금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금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획(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획을,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획을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획을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획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획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①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변경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 (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공급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66-9009)

■ 관리형토지신탁

본 아파트는 시행위탁자 화이트코리아(주), 시행수탁자 (주)무궁화신탁, 시공사 GS건설(주) 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및 관리형토지신탁사업약정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 시행수탁자는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재산의 보전 및 분양대금 완납자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하며, 본 사업관련 실질적 사업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시행위탁자에 있음을 인지합니다.
2. 본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시행위탁자와 시행수탁자간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일부 세대의 소유권이 시행수탁자에서 분양계약자로 이전된 경우, 해당 이전된 세대를 포함한다)와 동시에 분양계약 상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소유권이전,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의무 포함)는 계약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됨을 인지합니다.
4.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시행수탁자는 분양공급자(매도인)로서의 일체 의무(분양계약 해제/해지 시 분양대금 반환의무, 소유권이전 관련 업무, 입주지연 지체상금, 하자보수책임 등)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동 의무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 약정에 따라,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자가 관리형토지신탁사업약정에 의하여 부담합니다.
5. 분양계약자는 시행수탁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시공 상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6. 신탁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사업경비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시행수탁자는 신탁계약 및 신탁사업약정에 의거, 신탁계좌의 잔액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시행위탁자가 부담함을 계약자는 인지합니다.
8.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시행수탁자의 분양대금반환 의무 등은 신탁계좌의 잔액 범위 내로 한정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탁자의 고유계정에 속하는 재산으로 위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구조감리	통신감리	소방감리
회사명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진광건설엔지니어링	㈜아이스트	㈜이케이앤씨	㈜이케이앤씨
금액	₩7,395,644,300	₩874,749,400	₩151,470,000	₩285,000,000	₩945,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시행수탁자)	시공사	시행위탁사
상호	㈜무궁화신탁	지에스건설(주)	화이트코리아(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타워역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청진동, 그랑서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분당수지유타워 A동 2109호)
법인등록번호	110111-2867418	110111-0002694	110111-1440091

■ 건본주택 및 현장 위치 안내위치

건본주택 위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 위치안내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4-7 ■ 운영방식 : 송도자이 더 스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방지를 위해 사이버 건본주택(xi.co.kr/sd2)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분양문의 : 032)716-5582 ■ 홈페이지 주소 : https://xi.co.kr/sd2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및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